

##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### □ 제안이유

-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'90년도 이전에는 현업부서에서 단순한 노무에 주로 종사해 왔으나, 그 기능이 쇠퇴하고 '92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실적이 없고, 앞으로도 신규채용 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'92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의 정·현원이 한명도 없고 앞으로도 신규 채용 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동조례 폐지

### □ 첨 부

-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.

##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